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이용대상)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재가급여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
2. 주간보호센터 인근 거주자로 송영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11조(이용의 제한) 주간보호센터장은 다른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법정전염성 및 감염성 질환자
2.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이용정원) ① 이용정원은 별표1과 같으며, 이용정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의 이용정원으로 한다.

② 이용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우선이용대상으로 하며, 일반인의 경우 접수순으로 한다. 다만, 송영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모집방법) 주간보호센터장은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소식지 및 리플렛 등 오프라인을 통해 기관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 신청안내 등) ① 주간보호센터장은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이용확인서를 발급하고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단,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간보호센터장은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관할 보훈(지)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주간보호센터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주간보호센터장은 매년 10월말까지 요양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용자 명단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고, 12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으로부터

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 ④ 주간보호센터장은 요양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이용자가 퇴소를 한 경우 퇴소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보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 시 구비서류) ① 주간보호센터에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공통서류를 주간보호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는 1부)

②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2.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의료급여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제16조(계약기간) 이용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인정등급 및 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제17조(계약목적) 주간보호센터장과 이용자(보호자)는 쌍방의 의무 및 권한, 책임 및 서비스내용에 대해 상호 확인하고자 일정 양식에 의거하여 계약한다.

제18조(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와 비급여수가로 구분하며 이용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일수(시간)로 산정한다.

②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본인부담 비율
일반	15%
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0%~25%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25%초과~50%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③ 비급여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기타
중식 1식 : 2,800원/ 간식 1식 : 1,000원	없음	개별 희망 프로그램 · 물품

④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⑤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면혜택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요양지원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급여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주간보호센터에 제출하여야 감면 받을 수 있다.

대상구분	감면대상	보험급여	비급여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부상자를 제외한 유공자 본인)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 및 선순위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80%	감면 없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80%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40%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는 80%,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처고시) 제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감경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 ※ 이용자(2015년 12월 31일 신청자까지 포함한다)는 병원 입원진료를 목적으로 퇴소하였다가 재이용하는 경우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 받아 확인 후 퇴소전의 감면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이용계약 당사자 등의 권리와 의무) ① 시설이용 계약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3.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할 의무
4.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 의무
5.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 준수 의무

② 시설이용 계약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받을 권리
3.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의 의무
4. 이용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5.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의 의무
6.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7.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의 의무

③ 시설이용 계약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
2. 이용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4. 이용자의 월 이용료 및 이용비용 부담의 의무
5.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6.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할 의무

7. 이용자의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이송, 입·퇴원 절차 및 비용 부담의 의무
8. 이용자가 복용하는 약품 제공의 의무
9.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의 의무

제20조(계약의 해제) 주간보호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계약해지 조치할 수 있다.

1. 연간 60일 이상 입원(합산)으로 실질적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사람
2. 수시 흡인 및 감염성 확산 위험자로서 촉탁의사 등이 장기요양보다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3. 3개월 이상 이용료를 체납한 사람
4. 이용계약서 및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등급변경 신청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2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주간보호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재계약을 통해 이용료를 변경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요양원 운영규정의 비급여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주간보호센터장은 이용료 등 비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적용 전 이용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이용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